

『인권연구』 7(1): 265-278.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7(1): 265-278.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4.7.1.265>

[현장논단]

# 인도주의 구호활동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이주민 보호

: 우크라이나 피란민 구호를 중심으로

이 한 구\*

## 목 차

1. 서문
2. 가장 취약한 집단인 강제 이주민, 그들에게  
철실한 보호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청자에서 관계자로
4. 긴급구호 기간 동안의 우크라이나 피란민 보호
5. 일 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국에 장기 체류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보호
6. 결어

## 1. 서문

현장 또는 실무에서 ‘인도주의’와 ‘인권’은 때로는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접근 방법이 다른 이유는 그 태생에 있지 않을까 한다. 현대 인도주의 활동의 태생은 무력충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인도법이 전쟁법이라 불리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인도주의는 이미

\* 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팀 과장

발생한 위기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인권의 접근은 미래지향적이다. 세계인권선의 전문에서는 인권선언의 취지를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을 선포함에 있다고 미래지향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실제적인 차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인도주의 활동가에게 인도주의의 원칙인 ‘중립’은 상대적 개념이 아닌 절대적 개념이다. 어떠한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종교적 논쟁에도 개입하지 않고 공식적인 의견을 가지지 않으므로써 역설적으로 모두에게 구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용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중립’은 모든 국가나 단체로부터 보편적으로 접근성을 보장받기 위한 인도주의기관의 가장 견고한 방패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계층, 정치적 성향 등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달해야 하는 ‘공평’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접근은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로 인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생명과 건강의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인도적 지원의 전달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양 개념의 기본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국제규범인 ‘국제인도법(IHL)과 국제인권법(IHRL)은 접근방식의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존엄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체계는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두 법의 일부 조항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이에 인도주의와 인권의 공통의 지향점을 상기하며 현장 인도주의 구호활동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이주민에 대한 보호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주된 내용과 논지들은 지난 2년 간 루마니아에서의 우크라이나 피란민 구호활동

에 대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한 개인의 의견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사전에 밝히는 바이다.

## 2. 가장 취약한 집단인 강제 이주민, 그들에게 절실한 보호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강제이주민을 ‘박해, 갈등, 폭력, 인권 침해 및 기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사건으로 인해 고향, 지역 또는 출생 국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지속해온 활동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강제이주민이란 ‘인권이 보호 받는 존엄성 있는 삶을 위해 떠나야 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두 강제이주민이 아닐까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엔인권선언’에 제1조부터 30조까지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격을 보장받기 위하여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인권선언에서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권리를 고려할 때, 강제이주민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강제이주민은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성이 가장 큰 집단일 수밖에 없다. 취약성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평생을 쌓아온 경제-사회-문화-지식 자산이 당분간은 소용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의 회복탄력성이 거의 바닥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새로운 사회에 안착해야 하는 과정은 뿌리 뽑힌 나무를 새로운 환경이 이식하는 수목 이식과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수목을 안전하게 이식하기 위해서는 수목을 이식하기 전에 이식수목과 이식할 장소를 미리 조사하고 관찰해 이식수목의 특성과 수세 그리고 수목의 크기, 토양의 조건과 환경, 이식 식재거리, 굴취, 운반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시급하게 떠나야하는 단 하나의 선택을 밖에 남지 않은 강제이주민에게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는 불가능하다. 그러하기에 이들을 대

신하여 이식(이주)의 준비 또는 사후정착과정에서 일차적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이들은 바로 국제적, 국내적으로 이주민 ‘보호’에 책임을 가지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우리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보호’이다. 보통의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무력충돌 등의 재난 상황에서 현장 활동가들은 일반적으로 ‘구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인도적 지원은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데 그 목표를 두며 자연 재해(Natural disasters)와 인위적인(Man-made disasters) 재해로부터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하는 지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2)’

생명 구조, 고통 경감, 인간 존엄성까지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는 인도적지원-개발협력-평화의 연계(HDP Nexus)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현장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적지원의 초점은 단기간의 생명을 살리는 긴급한 지원에 맞춰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재난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기적 지원 이후, 재난의 영향을 입은 피해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이주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인도적 지원만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길이 요원하다. 실례로, 레바논에서 만났던 팔레스타인 이주민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2016년 강제이주민에 대한 국내 인식제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하여 미디어와 함께 레바논을 방문했다. 할머니, 어머니, 손녀까지 3대가 살고 있는 이 가족이 레바논으로 이주해온 것은 1960년대였다. 70대 할머니가 10대 시절 이들은 인권과 존엄성을 찾아 이웃 나라로 이주해 왔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집안 남자들은 모두 일거리를 찾아 또 다른 곳으로 떠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와 생계는 불안정했고,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온 60년 이후에도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 받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례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강제이주민에게는 ‘구호’가 아닌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의 생명을 살리는 ‘구호’를 넘어서서 이식한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대상자 중심(people-centered)의 ‘보호적’ 접근이 필요하다.

###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청자에서 관계자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서막이자, 양국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개인들의 비극 서사가 막을 올렸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2024년 5월, 지금이라면 한국사람 누구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 마디쯤은 할 수 있겠지만,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세계지도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단번에 짚어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2022년 3월초 두 번째 코로나에 시달리던 나는 격리 해제가 끝난 지 4일째 되는 날 우크라이나 피란민 현장조사 길에 올랐다. 9박 10일 현장조사를 기획했지만, 상황이 매일 매시 변화하는 현장임을 감안하여 확정된 일정은 처음 이틀 뿐, 폴란드적십자사에서 준비한 현지 조정회의와 구호창고에서의 현장 브리핑이 전부였다. 나머지 일정은 현장에서 수집하는 정보와 분석에 따라 수립하고 움직여야 한다. 코로나로 쓰러져 있는 동안 매일 쏟아져 나오는 현장보고서들을 숙지하지 못한 탓에, 10여 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내려 받아온 각 종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막상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해보니 현지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하던 혼란과 비극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곳곳에 붙어있는 우크라이나 국기와 키릴문자로 쓰인 안내문이 아니었으면 이 곳이 수백만의 전쟁 피란민이 대피해 온 나라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을 것이다. 바르샤바 역 인근 숙소에 짐을 풀고, 24시간 동안 잠들지 못한 피곤을 10분의 샤워로 씻어 내리고 바르샤바 중앙역으로 향했다. 그렇게 나는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의 시청자에서 관계자가 되는 첫 발을 내딛었다.

십 수 년간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무력충돌, 난민구호현장 등 다양한 현장을 다녔지만 내 눈에도 생경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 중에 내 눈을 사로잡은 건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의 인구 구성이었다. 어렵잖아 95% 이상의 피란민들은 여성, 10세 미만 아동, 노인들이었다. 과장되게 말하자면 모든 피란민들이 흔히 말하는 상대적 약자라고 불리는 노약자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당장에 필요한 생리적 욕구와 교통편을 얻은 뒤 각자의 미래를 향해 출발했다. 일부 소수의 가족들은 역 한 칸에 자리를 잡았다. 폴란드 정부, 민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 되어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들이 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문제 일거라 지레 짐작했다.

이틀 후, 현장 조사단은 폴란드 프셰미실에 도착했다. 수백만의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쏟아져 들어와 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바로 그 현장이었다. 개전 이후 약 2주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프셰미실의 상황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국경을 넘어온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제공할 각 종 생활용품, 따뜻한 식사와 간식, 유심카드, 다양한 정보들까지. 폴란드 전역과 세계 각지에서 현장을 찾은 활동가들이 넘치는 지원을 펼치고 있었다. 국경을 넘어선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은 이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기차역까지 이동하고, 기차역에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국내 및 국제 기차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의 눈을 사로잡은 것 하나는 ‘납치’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이었다. ‘개인이 제공하는 차편을 이용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이용한다면 꼭 차편에 대한 상세정보를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폴란드의 상황만 종합해 봤을 때 내린 판단은 폴란드 내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적지원이 현장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발길을 루마니아로 돌려 현장조사를 이어갔다.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지 않은 탓인지, 유입되는 피란

민의 수가 폴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탓인지, 루마니아는 이재민의 수요가 인도주의 지원 역량을 초과하고 있었다. 또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내부로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교두보가 여러 곳에 있었기에 현장 조사단은 루마니아를 거점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 4. 긴급구호 기간 동안의 우크라이나 피란민 보호

인도적 지원의 관점에서는 위기상황 발생 이후 3개월을 긴급구호 기간으로 바라본다. 이 시기에는 장기적 접근을 고려하면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한 지원을 최우선에 둔다. 식수, 영양, 주거, 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 긴급구호는 원활히 진행되었다. 서부유럽 전역에선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유럽연합의 신속한 대처에 따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양상은 전통적인 구호활동 보다는 또 다른 형식의 욕구가 우선시 된다는 것이었다.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적 지원은 물론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은 통신권과 이동권을 보장받기를 원했으며 이 조치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루마니아 대형 통신회사들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카드를 제공했고, 구호단체들은 모든 인도주의 서비스 포인트(Humanitarian Service Point)마다 휴대폰 충전소를 설치했다. 정부에서는 국영철도회사등을 통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적십자 등 인도주의 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 이들의 기본권을 지원했다. 수백만 명의 피란민들이 루마니아를 거쳐 갔지만, 이들은 신속하게 - 평균 2-3일 이내 -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대규모 인구이동사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황무지에 수 백동의 텐트가 정열한 전통적인 난민촌을 상상하고 들어온 국내 취재진들이 상상과 전혀

다른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이댈 곳을 잃고 당황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다만, 노약자, 여성, 어린이로 이루어진 피란민 인구구조 특성을 보았을 때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했다. 대부분 피란민들은 지역 사회로 산재되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공공서비스와 공권력이 제공하는 사회보호망이 촘촘하게 구성된 국가가 아니라면 전국에 퍼져 있는 또,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각 지역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들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보호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 또는 가용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주민들에게 제공했다. 현장 조사차 방문했던 시비우(루마니아 중부의 중소도시)의 한 유치원은 무력충돌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신속하게 가용한 시설을 확보하고, 피란한 사람들 중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고용하여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런 모든 정보들을 신속하고 적절한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에서는 온라인 정보 통합 플랫폼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 지점에서 인도주의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대중 인식의 중요성이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사태에서의 한국의 여론과 비교하면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수백만의 피란민들을 환대로 맞이한 루마니아와 수백 명의 난민신청자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던 당시 국내의 상황을 비교해보자면 대중 인식제고의 중요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인식 개선은 인도주의와 인권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와 활동가들이 한 목소리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주요한 협력분야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시 루마니아의 상황으로 돌아가보면, 루마니아 정부가 피란민에 대한 일차적인 보호책임을 지기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루마니아에 체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소재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소재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 이들을 체계

적인 사회보호망으로 품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루마니아 정부의 지원책의 직접수혜자가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아닌 이들에게 주거를 제공한 루마니아 국민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 인구이동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타국에 체류하는 강제이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의 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 주체의 모호성은 긴급구호 상황을 넘어 앞서 말한 레바논 사태처럼 피란민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건 이들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준비된 협력과 조정 메커니즘의 필요성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21세기 서유럽이 이러한 대규모 국제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어느 국가도 누구도 이런 대규모의 피란사태(강제이주)는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준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흥적으로 그리고 선의에 기반을 두고 긴급구호 활동이 진행되었지만,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강제 이주민 구호를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된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 물론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난민협약 등 기본적인 기반은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를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정과 협력의 실행 메커니즘 역시 사전에 준비 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 피란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국제협약 자체가 아닌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전달되는 인도주의 서비스이자 사회적 보호망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2022년 인도적지원 상임이사회(IASC: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는 보다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현금성지원을 위해서 모든 인도적지원 기관 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현금성지원 조정 모델(New Cash Coordination Model)’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조정 모델은 과도기를 거쳐 조정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적용되어 대부분의 인도적지원 기관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인도적지원의 영향력을 최대

화하여 피해민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금성지원분야에 적용되는 하나의 예이지만, 사회적 보호의 경우에는 인도적지원기관 뿐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들까지 포함된 보다 광범위한 조정체계와 실행 메커니즘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5. 일 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국에 장기 체류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보호

루마니아에 체류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는 특이한 강제이주 상황이 지속되었다.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루마니아 국경은 언제든 통행이 가능했다. 전투가 치열한 일부 전선을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언제든 방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이한 상황은 우크라이나 피란민 보호에 대한 책임주체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 루마니아 현지에서는 난민사태의 전체적인 조정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난민기구의 주도하에 매년 지역대응계획(Regional Response Plan)을 수립하고 국내외 인도주의 기관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중복은 피하고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을 이끌어 나갔다. 지역대응계획의 주요 방향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대한 사회적보호(Social Protection)와 통합(Integration)이었다. 지역대응계획의 두 방향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 보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제기되는 문제는 보호의 책임주체이다. 대한민국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의 주체는 자국정부가 가진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 상황에서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생각할 여유가 없고, 루마니아 정부는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으로 루마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주거 및 생계지원정책을 펼쳤다. 우크

라이나 피란민 가구를 대상으로 구성원 1인당 1일 10유로의 주거비와 4유로의 식비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지원정책이었다. 다만, 수행 방법은 큰 의문을 남겼다. 이 대규모 경제지원의 직접 수혜자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아닌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받아들인 루마니아 임대인들이었다. 4인 이상의 우크라이나 가족에게 집을 내어준 루마니아 사람들은 기존 시장가를 상회하는 큰 이익을 남겼다. 식비 역시 임대인들에게 지급되었고, 관리비 및 경상비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식비를 가로채는 임대인들도 부지기수였다.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은 다행히 임시로 머물 곳은 제공 받았으나, 이러한 정책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호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책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3년 4월 루마니아 정부는 지원 방법을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내가 루마니아를 떠나기 직전인 2023년 12월까지 실제로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지급된 주거비와 식비는 2개월 치에 불과했다.

또한,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우크라이나 정부, 루마니아 정부 그 어느 쪽도 루마니아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국경을 드나드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보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상세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기본적인 주거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사회적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요원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는 점은 피란민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 초기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단기 체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피란민들이, 이제는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역량이 있는 이들은 기회가 더 많은 다른 국가로 떠나거나 루마니아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아이들을 루마니아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고,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성인들은 루마니아어를 배우고 취업을 준비하여 생계에 대비한다. 반면 생계 능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취약성이 큰 고령자, 장애인, 한 부모 가구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었

다. 레바논의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정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보호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은 사회적 보호망에 포함하는 일이 시급해 보였다.

사회통합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특히 대량의 이주민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사회의 부정적인 갈등과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다만, 상황의 특수성이 분명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루마니아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시보호(Temporary Protection)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난민신청을 하면 공식적인 루마니아 정부의 보호체계에 편입되어 더 많은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난민신청자의 수는 극소수다.

이는 아직까지는 루마니아 사회로의 완전 이주를 고려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많지 않음을 말해준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의지, 개방되어 있는 양국 간의 국경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강제적인 사회통합을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루마니아 정부의 경제적 지원 대상은 루마니아 내에서 취업을 한 자, 루마니아 공교육 시설에 자녀를 입학시킨 자 또는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루마니아어 수업을 듣는 자에 한정된다. 양국의 언어, 민족 구성, 사회적 배경 등이 상이한 점으로 볼 때 단기간에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루마니아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교육체계와 언어가 전혀 다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결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오히려 일방적인 통합을 강조하는 것보다 루마니아 내에서 우크라이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지원하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 조금은 더 순탄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본다. 커뮤니티가 생기면 그 안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사회가 생기고, 교육이 생긴다. 한국에도 다양한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출신에 맞는 커뮤니티를 각 지역에 만들어 나가듯이, 미국에 대규모 한인 타운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취

약한 강제 이주민 개개인을 낯선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일차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기존 사회와 통합시키는 방향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인도주의 분야에서 말하는 ‘공평’의 원칙, 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보편성’의 현실적 적용 문제이다.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대하는 세계 시민들의 자세는 존중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다른 이주민에 대한 역차별을 들여다보면 고민이 깊어진다. 루마니아 현지에서만 보아도 수년 전부터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아랍 및 중동에서 들어온 수많은 강제이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 취약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수준 그리고 특정한 민족 집단은 만성적인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보호망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다. 현장 활동가의 입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노숙인과 취약계층, 다른 국가 출신 강제이주민들의 욕구와 인권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국가 출신의 피란민에게만 초점을 맞춰 인도주의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드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경험이었다.

## 6. 결어

지금까지 길게는 13년간의 인도주의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으로, 짧게는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 피란민 구호현장에 보낸 경험을 발판으로 한 인도주의 구호활동가의 관점에 바라본 강제이주민의 보호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를 요약하자면,

첫째, 인도주의와 인권 양 분야에서 대중 인식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대중의 우호적인 인식 아래에서만 공통의 지향점인 생명과 건강의 보호,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둘째, 강제이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보호’이며,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각국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하여 명확한 보호주체를 지정해야만 한다. 보호주체 없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

셋째,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난민법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실행 메커니즘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미 준비된 메커니즘도 있지만, 각 국에서 또는 역내에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준비된 메커니즘만이 강제이주민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넷째, 통합은 지향해야 하는 가치이다. 다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인도주의와 인권 분야가 상호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인간 존엄성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면, 본문에서 언급한 강제이주민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의 대의를 위하는 항구적인 평화가 유지되는 인류의 미래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코 꿈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